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공고 사유
1	송 * 연	2000.12.2.		
2	홍 * 연	2000.12.5.		
3	이 * 리	2000.12.7.		
4	이 * 준	2000.12.9.		
5	김 * 주	2000.12.13.		
6	김 * 연	2000.12.14.		
7	최 * 빙	2000.12.14.		
8	이 * 희	2000.12.17.		
9	장 * 현	2000.12.17.		
10	남 * 육	2000.12.18.		
11	유 * 현	2000.12.19.		
12	김 * 은	2000.12.19.	2018.1.1. ~ 2018.12.31.	폐문부재
13	박 * 민	2000.12.22.		
14	이 * 영	2000.12.22.		
15	박 * 현	2000.12.23.		
16	양 * 인	2000.12.23.		
17	박 * 우	2000.12.24.		
18	신 * 철	2000.12.27.		
19	정 * 기	2000.12.28.		
20	김 * 준	2000.12.29.		
21	배 * 진	2000.12.29.		
22	김 * 흔	2000.12.29.		
23	김 * 진	2000.12.31.		

※ 발급안내

-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3)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3cmx4cm 또는 3.5cmx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진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박준기 문의전화 : 052-290-4680)

2018년 1월 8일

다운동장

